

# 학생준칙

제정	1995. 3.
개정	2012. 7.
개정	2017. 8.
개정	2019. 3.

## 제 1장 총 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(이하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정하지 않은 본 대학 학생(이하 “학생”이라 한다)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기본이념)** 학생은 본 대학의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자립, 단정, 독행정신의 자세로 교내외 생활에 임하여,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창의력과 학구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제 2장 학생증

**제3조 (학생증 교부)** 입학수속을 마친 학생은 즉시 학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.

**제4조 (등록확인)** 학생은 매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.

**제5조 (휴대)**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시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학생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자는 수강, 수험 또는 실험 실습실 및 도서열람실 등의 출입에 제한을 받게 된다.

**제6조 (대여 및 변조금지)**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, 다른 목적으로 변조할 수 없다.

**제7조 (재교부)**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학생복지처에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## 제 3장 학생단체

**제8조 (학생단체 설립)** ①본 대학 학칙 및 관련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학생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.

②제1항에 의한 학생단체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설립할 수 있다.

1. 봉사의 목적
2. 학술연구 및 예술 활동의 목적
3. 체육 및 친교의 목적
4. 기타 학생회 임무수행의 목적

다만, 학생회 등 설립 및 활동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.

**제9조 (등록요건)** 학생단체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- ①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단체가 아니어야 한다.
- ②소속단체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성하는 정규회원이 25명 이상이어야 한다.
- ③단체의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.
- ④설립목적이 타 단체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.
- ⑤단체는 원활한 활동과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⑥전 항의 단체는 지도교수의 취임 승락을 받아야 한다.

⑦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.

**제10조 (등록절차)** ①학생단체로서 신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학생단체 등록신청서(소정양식)
2. 지도교수 취임 승락서(소정양식)
3. 등록 년도 행사계획서(소정양식)
4. 전년도 행사실적 및 평가보고서(소정양식)
5. 학생단체별 회칙
6. 회원명단

②학생단체는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등록하여야 한다.

**제11조 (학생단체 대표자)** 학생단체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- ①품행이 방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지도력이 있는 학생
- ②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
- ③학생단체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(개정2019.03.06.)

**제12조 (임원)** ①학생단체 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각 학생단체의 회칙에 따른다.

②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명부를 즉시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,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3조 (지도교수)** ①지도교수는 단체로부터 추대 받은 전임교수 이상의 본 대학 교원으로 한다.

(단,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빙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) (개정2017.08.28.)

②(삭제 2017.08.28.)

③지도교수는 소속 단체의 모든 학내외 행사에 참석하여야 하며, 그 단체의 활동을 책임 지도하여야 한다.

④지도교수가 해외연구 파견 및 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교수에게 일정기간 대리 업무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복지처장에게 위임교수를 추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⑤지도교수가 사임했을 경우에는 사표수리 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지도교수 취임 승락서를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4조 (설립시기)** 등록신청을 마친 학생단체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복지처장이 공고한 때부터 학생단체로 인정한다.

**제15조 (해산명령)** 총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학생단체의 임원개선이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.

- ①단체 활동이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
- ②단체 활동이 학내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
- ③단체 활동이 부진할 때
- ④기타 단체의 존속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

**제16조 (재정)** ①학생단체운영상의 재정은 회원의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②학생복지처장은 필요한 경우 단체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③학생단체대표자는 매년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를 경유 학생복지처장에게 보고하고 소속단체 전 회원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17조 (단체의 활동)** ①등록된 학생단체는 학교행사 또는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
②모든 행사는 사전에 행사계획서 및 시설물사용 신청서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.

③모든 집회는 정상수업과 중복되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생복지처장에게 사전에 허락

을 받아야 한다.

④야간 옥외 집회 시에 햇불,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생복지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⑤집회에 관한 게시물, 현수막, 프로그램, 팸플렛, 기타 유인물은 그 초안을 사전에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, 인쇄하여 배부한다.

**제18조 (등록취소)** ①등록된 단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(개정2019.03.06.)

1. 학생단체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대학생다운 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
2. 학생단체의 활동이 학생회활동운영 규정에 위배되거나 학교 명예를 손상시킬 경우
3. 1년간 행사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
4. 기타 본 규정을 위배했을 경우

②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학생단체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통폐합 할 수 있다.

③학생단체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는 해체 사유서를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9조 (동아리실 이용시간)** ①동아리실은 08:00~22:00까지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학교행사 준비 등 특별한 경우 22:30분까지 학생복지처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.(개정2017.08.28.)

②제1호의 시간외 동아리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학생복지처에 행사계획서를 제출한 후 별지 서식에 의거 이용신청을 하며, 학생복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(개정2017.08.28.)

**제20조 (이용 시 금지사항)** 동아리실 이용자는 동아리실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행위를 금지한다.(개정 2017.08.28.)

- ①음주, 고성방가 및 도박행위
- ②취사도구 사용, 인화물질 반입 등 화재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
- ③침구류 반입 및 동아리실내에서의 기숙행위(개정2017.08.28.)
- ④건물의 형질변경, 교구 및 시설물의 파괴 및 무단 반출 행위
- ⑤게시물의 무단부착 또는 철거 및 훼손행위
- ⑥학교의 허가 없는 외부인 및 단체의 이용행위
- ⑦불법집회 및 정치활동
- ⑧기타 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

**제21조 (벌칙)** ①동아리실내 기물을 손괴 한 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 (개정2017.08.28.)

②제19조 및 제20조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학생복지처장은 즉각 시정하도록 지시하며 이를 불응 시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.

**제22조 (서약서)** 동아리실을 배정받은 학생단체의 대표는 매학기 초 동아리실 사용에 관한 소정의 서약서를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2017.08.28.)

## 제 4장 집회.게시.간행물

**제23조 (집회신고 및 승인)** ①집회 및 행사는 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개시 1주일 전까지 학생복지처에 신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허가신청서가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③학기 중 학사일정 및 수업에 방해되는 집회는 절대 불허한다.

④다른 대학 및 단체 등과 연합행사인 경우에도 행사내용, 예산서, 참가대학 및 단체명, 홍보물 등

을 첨부하여 제1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**제24조 (게시물)** ①학생이 개인 또는 학생단체의 명의로 광고, 게시 등을 첨부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복지처의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.

②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첨부하고 게시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.

③모든 게시물의 규격은 8절지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규격초과 게시물은 학생복지처장의 허가를 받아 게시한다.

**제25조 (간행물)** ①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발간하는 정기·부정기의 모든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편집, 제작되어야 한다.

②모든 간행물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고 배포하여야 한다.

## 제 5장 포상과 징계

**제26조 (포상의 대상)**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
1.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
2. 학교와 사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학생
3.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였거나,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
4. 사상이 건전하고 지도능력이 탁월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
5. 지도교수의 포상 추천을 받은 학생

**제27조 (포상의 발의와 결정)** ①제26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도위원회에 상정하여 포상을 발의할 수 있다.

1. 공적조서 1부
2. 지도교수 추천서 1부
3. 학과(부)장 의견서 1부

②학생복지처장은 발의된 포상 대상자에 대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포상을 상신 하여 확정한다.

**제28조 (징계)**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처벌 할 수 있다.

- ①학칙 및 학생준칙을 위반한 자
- ②시험기간 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
- ③학생 상호간에 폭력을 행사한 자
- ④학교 재산을 파손 또는 절취한 자
- ⑤교직원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하거나 불손한 행위를 한 자
- ⑥고의로 수업 또는 행사를 방해한 자
- ⑦학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목적 외 이용한 자
- ⑧교내에서 음주하거나 또는 음주하고 등교한 자
- ⑨허가 없이 게시물을 첨부하여 선동적 행위를 한 자
- ⑩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자

**제29조 (징계의 구분)** ①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경고, 근신, 정학, 제적 및 퇴학을 처분한다.

②1주일 이상 1개월 이하의 근신기간 중인 학생은 학내외 생활을 통하여 과오를 반성하여야 하며, 교내외 활동에 참가하지 못한다.

③정학은 유기와 무기로 하고 유기정학은 1개월 이하, 무기정학은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.

**제30조 (징계의 발의와 결정)** ①학생회 및 학생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생복지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1. 사건경위서 1부
2. 본인의 진술서(경우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음) 1부
3. 지도교수 및 학과(부)장 의견서 1부

②학생복지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회의록을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31조 (징계 결정사항 통보)** 징계가 결정되면 즉시 그 내용을 대상학생과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32조 (특별지도 및 권리의 정지)** ①제적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 중 지도교수 및 학과(부)장의 지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.

②근신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.

③근신 이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그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정지된다.

**제33조 (징계의 감면 및 해제)** 지도교수 및 학과(부)장으로부터 징계중인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 결과 보고서와 징계감면 및 해제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면 학생복지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 후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.

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9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 (적용의 특례)**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